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03일

조도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례	김 *례 1920-02-15	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리길	직권말소 2021-12-02